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020-02

베어링자산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5 호자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75 조의 2 에 따라 당사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1.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의결권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주주가 갖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당사는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보유 종목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회사 등이 상정한 주주총회의 안건에 자동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당사 의결권 정책을 바탕으로 개별 안건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인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와 더불어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인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용’을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공개는 당사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일관성에 대한 고객 및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은 연 1 회 이상 일괄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는 관련 법규 및 내부 상황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독립적인 제 3 자 기관(리서치 제공업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로,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이 고객의 최선의 경제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리서치 제공업체의 추천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의결권행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주식운용팀이 의결권 행사 지시사항과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작성하고, 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의 승인을 거쳐 행사됩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첨 1) 의결권행사 규정 및 절차」 및 「별첨 2) 스투어드쉽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담당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 1) 의결권행사위원회 : 포트폴리오 매니저, 오퍼레이션, 컴플라이언스 또는 의결권 행사 처리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기에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는 팀의 대표자로 구성
- 2) 주식운용팀 : 의결권 행사 검토 및 결정
- 3) 펀드오퍼레이션팀 : 의결권 행사 관리 및 공시
- 4) 컴플라이언스팀 : 이해상충 등의 검토

3. 이해상충 방지 정책

회사와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리서치 제공자가 의결권에 대한 분석과 행사 추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리서치 제공자의 추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리서치 제공자의 의견과 다르게 행사하는 근거가 합리적인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팀원이 행사 대상 회사와 이해상충이 있거나, 회사가 의결권 행사의 대상 기업과 사업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실제 이해상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직원은 해당 이해상충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이해상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대상 회사가 당사의 고객인 경우
- 당사의 직원이 의결권 행사의 대상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
-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또는 파트너/배우자가 의결권 행사의 대상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의결권 행사의 대상 회사가 베어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경우

보다 상세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별첨 1)의결권행사 규정 및 절차」 및 「별첨 3) 스투어드쉽코드 - 이해상충방지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

당사는 일임투자자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은 경우, 투자자와 별도 사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사후 통지를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스투어드쉽코드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에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을 연 1 회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